대통령령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로 하고,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하며, 제14조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14조의6(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에 따

라 그 담당 사업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담당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연동지원본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전담조직 보유 현황

3. 전담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5.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4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4호,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또는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28조제1항의 분쟁의 조정 요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벌점의 부과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시정명령
3.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제27조의2제1호 중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한다.

별표2를 별표3으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 2] (안)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의6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사유	근거 법조문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의4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22조의4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의4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14조 ~ 제14조의4 (생 략)	제14조의2 ~ 제14조의5 (현행 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와 같음)
<신 설>	제14조의6(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에 따라 그 담당 사업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담당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연동지원본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전담조직 보유 현황 3. 전담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5.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4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기

	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생 략)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4호,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또는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28조제1항의 분쟁의 조정 요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벌점의 부과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시정명령 3.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4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1. 제14조의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연 락 처	(044) 204 - 7908